긴급동의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의자
26	10	1985• 4• 18.	총제 최창락

의 안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의결사항 : 1•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중 제 2조 제 1항<별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구 분	이율	
	현 행	개 정 (안)
1• 정 기 예 금 2• 저 축 예 금	(생 략)	(현행과 같음)
3• 자유저축예금	(신 설)	연 12•0% (실명의 개인에 한하여 1인당 2,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 가계종합예금 5•·보 통 예 금 6• 별 단 예 금 7• 당 좌 예 금 8• 정 기 적 금	(생 략)	(현행과 같음)

861

36/44

구 분	이 율	
	현 행	개 정 (안)
9. 가계우대정기적금	(신 설)	연 13.0% (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000만원 이내)
10. 상 호 부 금	(생 략)	(현행과 같음)
11. 상업어음일반매출		

2. 시행일자 : 1985. 4. 19

제의관계 법규조항 : 한국은행법 제 7조 및 제 65조

제의취지 : 최근 제 2금융권의 계속적 업무신장 및 이에 따른 금융시장내에서의 은행수신「쉐어」저하현상에 대처하여 은행의 새로운 가계저축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가계저축의 증대와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장기설비금융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1. 관계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 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 65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첨 부 물>

"금융기관 예금의 기간별 최고이율 및 대출 최고이율" 개정 (안)

<첨부물>

"금융기관 예금의 기간별 최고이율 및 대출 최고이율" 개정(안)

① 예 금

(연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정 기 예 금	(생 략)	(현행과 같음)
정 기 적 금		
1년이상 3년이하만기	10•0	10•0
	(지방은행은 10•5)	(지방은행은 10•5)
가 계 우 대 정 기 적 금	(신 설)	13•0
자 유 저 축 예 금	(신 설)	12•0
6개월 이상		9•0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0
3개월 미만		
상 호 부 금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대 출

(연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수출어음대출, 외화표시공급자금대출,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및 한국은행의 담보대출이 되는 농수산자금대출	(생 략)	(현행과 같음)
2. 상호부금 곱부금		
3. 팩토링 대출		
4. 1년초과 시설자금대출	(신 설)	13.5
5. 제 "1" 내지 제 "4" 이외의 상업어음할인, 당좌대월등 모든대출	(생 략)	(현행과 같음)
6. 연 체 대 출		

1985. 4. 18
제10차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제26호 부의안 설명자료

은행의 가계저축증대 및 설비금융 확대방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차 례

I. 문제의 제기 1

II. 대응 방향 4

III. 시행 대책 5

IV. 기대 효과 10

867

I. 문제의 제기

1. 금융시장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위축

— 제2금융권의 계속적 업무신장 및 은행수신Share의 급속한 저하

-> 금융시장간의 불균형 심화

—> M2와 M3간의 괴리 확대

< 요 인 >

o 84년중 2차에 걸친 금리조정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단기수신금리 격차는 더욱 확대

o 특히 통화긴축에 따른 기업자금 공급보완을 위해 제2금융권에 유리한 고율의 신종상품 취급허용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수신Share 추이

(억원,%)

	82말	83말	84말	85.3말
은 행	187,084 (62.6)	219,410 (59.2)	250,827 (56.1)	260,656 (55.6)
제2금융권	111,776 (37.4)	151,468 (40.8)	195,991 (43.9)	208,138 (44.4)
계	298,860 (100.0)	370,878 (100.0)	446,818 (100.0)	468,794 (100.0)

M2와 M3의 괴리추이

(전년동월비,%)

	82	83	84	85.3
M2(A)	30.4	14.7	8.9	8.8
M3(B)	33.2	21.6	20.0	22.6
B - A	2.8	6.9	11.1	13.8

— 금융시장 자금 Flow의 단기유동화 및 은행의 장기설비금융 공급기능 위축

—> 기업은 단기고리의 단자등 제2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자금조달의 불안정성 및 금융Cost증대

—> 특히 설비투자 자금수급의 마찰심화

은행의 시설자금대출 추이

(증감액,억원)

	82중	83중	84중	85.1~3중
시 설 자 금(A)	7,969	8,857	4,268	1,051
대 출 금(B)	39,550	34,924	35,310	11,042
A / B (%)	20.1	25.4	12.1	9.5

2. 은행의 가계저축유인 미흡

— 국내저축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가계 장기저축유인 강화를 통한 실질적 저축기반 확대가 긴요하나 은행저축성예금중 가계예금의 비중은 오히려 저하

은행저축성예금중 개인예금추이 (억원,%)

	82말	83말	84말	85.2말
저축성예금(A)	136,597	156,727	173,062	172,120
개인예금 (B)	103,133	111,731	120,641	119,520
B / A	75.5	71.3	69.7	69.4

* 85년 경제운용계획상 국내총저축율은 전년의 27.4%에서 28.6%로 가계저축율은 8.1%에서 9.0%로 제고 필요

경제운용계획상의 85년도 주요경제지표

	83	84	85계획
경제성장(%)	9.5	7.6	7.5
도매물가(%)	-0.8	1.6	1~2
소비자물가(%)	2.0	2.4	2~3
경상수지(억$)	-16.1	-13.7	-5~-7
국민저축율(%)	24.8	27.4	28.6
(가 계)	(7.5)	(8.1e)	(9.0)

II. 대응방향

— 은행의 가계 장기저축증대를 통한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제2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저축상품을 개발

-> 가계 장기저축에 대한 금리면의 우대

— 은행의 수신증대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은행여신공급을 확대하되 특히 이를 생산적인 장기 설비금융으로 지원토록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설비금융 취급유인 부여

o 장기설비자금 취급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및 Risk 증대등 기회비용을 금리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현행 대출금리의 차등폭 확대

===>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및 이를 통해 기업금융 Channel을 제2금융권의 단기고리금융에서 은행의 장기저리여신 중심으로 전환

III. 시행대책

1. 가계저축 증대방안

가. 자유저축예금제도 신설

— 가계금전신탁 취급대상에서 제외된 특수은행의 장기저축 유인수단으로 개인의 결제성 계좌인 저축예금에 대하여 장기에치시 금리를 우대함으로써 기한부예금의 성격을 가미

o 성격 :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성예금

o 가입대상 : 개인(실명의, 1인 1계좌)

o 가입한도 : 2,000만원(현행 저축예금한도 3,000만원)

o 금리 : 6개월이상 연 1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9%

3개월 미만 연 6%(현행 저축예금금리)

o 기타 : 예치기간의 계산은 선입선출방식에 의함

(가계금전신탁과 동일)

가계금전신탁과의 금리비교

(연%)

	자유저축예금	가계금전신탁
3개월 미만	6.0	1.0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0	6.0
6개월이상 1년	12.0	실적배당*(헤지수수료 0.5% 징구)
1년초과		실 적 배 당*

* 12.0 ~ 12.5% 예상

< 참고 > 가계금전신탁 취급실적 및 특수은행예금동향

— 일반은행(KEB포함)이 3.25일부터 취급하고 있는 가계금전신탁은 4.10일까지 보름간의 총수탁액이 2,307억원에 달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계좌당 평균 금액이 비교적 소액(260만원)으로서 당초 도입취지대로 가계의 저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가계금전신탁 취급기관에서 제외된 국민은행등 특수은행은 기존예금의 가계금전신탁으로의 Shift에 따라 예금감소 현저

은행그룹별 예금추이(3.25~4.10) (억원)

	일반은행	특수은행	국민	농협	주택	계
요구불예금	-1,570	-173	-88	-149	-33	-1,743
저축성예금	-789	-773	-340	-313	-105	-1,562
(정기예적금)	17	-490	-152	-207	-73	-473
(저축예금)	-745	-163	-95	-71	14	-908
(목돈마련저축)	-162	-287	-132	-35	-158	-449
계	-2,359	-946	-428	-462	-138	-3,305

나. 가계우대적금제도의 신설

— 가계의 장기 정기적금에 대한 금리 우대를 통하여 가계저축의 획기적 증대 및 은행 수신구조의 장기안정화 도모

o 가입대상 : 개인(실명의, 1인 1계좌)

o 가입한도 : 1,000만원(계약액 기준)

o 계약기간 : 3년

o 금 리 : 적금대출을 받지 않은 분에 대하여 만기지급시에 현행 정기적금 금리(연10.0%)외에 연3.0%의 특별금리 가산지급

< 중도해지금리 >

1년이상 1년6개월미만;정기적금금리10.0%
1년6개월이상 2년미만; " +특별금리 1.0% = 연11.0%
2년이상 3년미만 ; " + " 2.0% = 연12.0%

< 참고 > 정기적금 추이

(억원)

	82중	83중	84중	85.1-3중e	(85.3잔액)
가 계	3,323	507	-308	-1,140	(17,873)
기 업	-6,346	-2,615	-1,294	-100	(1,542)
계	-3,023	-2,108	-1,602	-1,240	(19,415)

2. 설비금융확대방안

— 은행의 설비자금 취급촉진과 신종상품취급에 따른 은행수지부담의 완화를 위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최고금리를 2%포인트 인상함으로써 금리차등폭 확대

— 다만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증가를 감안 1985.4.19일 이후 신규취급분에 대해서만 적용

대출금리 조정안

현 행	개 정 (안)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신용도에 따라 연10.0~11.5%	1년초과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는 신용도 및 대출기간에 따라 연 10.0~13.5% (신용도에 따른 1년이내 대출금리에 연2%포인트범위내의 가산금리 적용)

o 외국의 경우에도 장기대출에 대하여는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관행임

각국의 장단기 대출금리구조(84말)

(연%,%-p)

	미 국*	일 본	서 독
단기대출(A)	11.77	5.5	6.18
장기대출(B)	13.91	8.2	7.98
B - A	2.14	2.7	1.80

* 84.11말 현재

o 기업으로서도 은행의 장기설비금융 Availability가 증대됨으로써 제2금융권 등을 통한 고리자금 조달비중이 낮아져 전체적인 금융비용 절감 가능

IV. 기 대 효 과

1. 은행수신 증대효과

자유저축예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제도 신설에 따른 은행수신의 신규증가효과는 약 5,500억원으로 추정됨

은행수신 증대효과 추정

(억원)

	기존예금쉬프트	신규증가	계
0 자유저축예금	15,000*	4,000	19,000
0 가계우대정기적금	5,000	1,500	6,500
계	20,000	5,500	25,500

* 정기예금 1조원, 저축예금 5천억원 Shift

2. 은행수지효과

— 금리면에서 우대하는 신종금융상품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Cost 상승에도 불구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효과를 감안하면 초년도에는 수지면에 다소 압박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자금이 고리의 시설자금으로 대체될 것이므로 연간 약390억원 정도의 수지개선 예상

<u>금융기관의 수지효과</u>

1) 신규수신 증대분의 시설자금대출 운용 : 83 억원

5,500 x (13.5 - 12.0) = 83

2) 기존 예금 쉬프트에 따른 수지악화 : — 511 억원

정기예금 : 10,000 x (12.0 - 9.64) = 236

저축예금 : 5,000 x (9.0 - 6.0) = 150

정기적금 : 5,000 x (12.5 - 10.0) = 125

3) 기존 시설자금의 고리 시설자금대체에 따른 수지개선 : 820억원

41,000 x (13.5 - 11.5) = 820

계 [1 + 2 + 3] 392 억원

3. 기업 금융비용 부담

— 은행의 장기설비금융 Availability 증대로 제2금융권 자금 등 고리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시킴으로써 약 240억원의 기업금융비용 절감 가능

5,500억원x(17~18 - 13.5) = 240억원

↑ 신규 시설자금 공급규모

↑ 회사채, 외화대출 평균금리

↑ 시설자금 최고금리

〈요 조 치 사 항〉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금통운위) 및 동 "지침"(총재)개정

〈시 행 일 자〉

1985. 4. 19